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외국선박에 납품하기 위한 선용품으로 100V의 소형 가전용품을 수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서에 요건 면제 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통관 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요건면제 확인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요건 면제 신청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전기용품이 선박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기용품일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면제가 가능하나,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있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시고자 하는 전기용품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제품카타로그, 사진, 구조도 등)를 우리원에 제출하시어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 확인(공문으로 회신해드림)이 될 경우에 한하여 안전인증의 면제가 가능하며, 안전인증 면제확인은 저희 협회(02-579-329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안전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제품을 수입코자 하는 데, 제품에 부착 (또는 인쇄) 되는 라벨에 명시 해야 하는 내용의 규격이나 표시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문의하신 제품은 전기용품인증대상은 아니지만, 그 표시사항을 문의하셨기에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의 표시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안전인증의 마크, 2. 안전인증번호, 3. 제품명칭, 4. 모델명, 5. 정격전압, 6. 제조업체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7.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이중절연 기호, 8.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 시간, 9.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예 : 제조년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년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10. 애프터서비스 연락처, 11. 기타 사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을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Tel:02-509-72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